

##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접수번호     | 접수일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        | 3일     |
| 신청인      | 성명(명칭)              |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|        |
|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| (전화번호)       |        |
| 신청<br>어선 | 선박명                 | 진수연월일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| 톤수                  | G/T          | 마력수 HP |
|          | 선적지 및 어선번호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| 주요기기 및 시설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| 신청<br>내용 | 운반 구역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| 운반 대상 어획물 또는 제품의 종류 |              |        |

「수산업법」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  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
| 첨부<br>서류          | 1. 「어선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<br>2.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(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)<br>3.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<br>4.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| 수수료<br>조례에<br>따름 |
| 담당<br>공무원<br>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2. 선박검사증서(「수산업법 시행령」 별표4 제2호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3. 선박국적증서등(어획물운반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「어선법」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)  |                  |

#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# 처리절차

